

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조남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 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4085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생활교육의 원칙) 학생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 (설치) 학생의 생활교육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②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④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 ⑤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 학생생활교육 사항 심의(교감, 학생안전부장, 학년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4.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학년 생활지도계)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

- 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⑦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⑧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10조 (회의 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14조 (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5조 (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 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 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 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 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상담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16조 (생활교육의 기준) 학생 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행 위 내 용	선도종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항 예절	1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	0			
	2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0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0			
	4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0			
	5	상습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0	0		
	6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0	0		
2항 준법	7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0	0		
	8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0	0		
	9	학교 시설물에 방화 시도 및 방화한 학생	0	0		
	10	3회 이상 훈계 지도를 받았으나 개선이 없는 학생	0	0	0	0
	11	교사에 대해 불손한 언행과 지시에 불응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	0	0	0	0
	12	학교 단체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0			
	13	학교 출입 시 월담한 학생	0			
	14	형법상 유죄를 판결을 받았거나 법에 저촉되어 학교 및 지역에 선도 위임된 학생	0	0	0	0
	15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한 학생	0	0	0	0
	16	절도 및 도박을 한 학생	0	0		
	17	상습적으로 고성 방기한 학생	0	0		
	18	학생으로서 품위를 망각시키고 사회의 물의를 야기했거나 학교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학생	0	0	0	0
	19	재학 중 문신 또는 자해 행위를 한 학생	0	0	0	0
	20	법령 및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0	0	0	0
	21	공공문서(진단서, 성적표 등)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0	0	0	0

구분	행 위 내 용	선도종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3항 근태	22	고의적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등 출결이 불량한 학생	0	0		
	23	고의적 미인정 결석이 연속 5회를 초과한 학생	0	0		
	24	고의적 미인정 결석이 연속 10회를 초과한 학생	0	0	0	
	25	무단 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0	0	0	0
4항 약물	26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담배, 유사담배, 라이터, 주류 등을 소지한 학생)	0	0	0	0
	27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0	0	0	0
5항 집단 행위	28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씨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권유한 학생(폭력 단체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적용)	0	0		
	29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지키지 않게 한 학생	0	0	0	0
6항 수업	30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한 학생	0			
	31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학생	0			
	3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0	0		
	33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를 선동한 학생	0	0	0	0
	34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0	0	0	0
	35	단체 행동 및 수업 거부, 교사 기피 선동자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	0	0	0	0
7항 정보 통신	36	채팅이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어폭력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한 학생	0	0	0	0
	37	불건전 서적(외설물) 및 통신매체 등을 소지한 학생	0	0	0	0
	38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학생	0	0	0	0
	39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물 게시 및 홍보한 학생	0	0	0	0
	40	사이버 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가담하거나 남의 ID를 도용한 학생	0	0	0	0
	41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위조 및 도용한 학생	0	0	0	0
	42	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나 해킹을 했을 경우	0	0	0	0
	43	불법 사이트 가입 및 특정 사이트에 극심한 운영에 불편을 주는 행위	0	0	0	0
	44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아르바이트(성매매 알선 및 가담)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	0	0	0	0
	45	타인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각종 서버에 악의적인 해킹을 하여 큰 피해를 준 학생	0	0	0	0
8항 기타	47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0	0	0	0
	48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	0	0	0	0

● 생활교육 기준 외의 것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생활교육지도 기간의 경감)

- ① 위원장은 지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학급 담임 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지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재학 동안 모범상, 교육계 내부상(교육회장, 교육장, 교육감, 교육부 장관) 외부상(전국 규모 이상의 각종 상)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경감할 수 있다.

제20조 (생활교육지도 해제)

- ①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지도조치 해제 시 학생안전부장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급 담임 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행한다.
- ②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지도 조치 해제 시 학생은 학교생활인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각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21조 (사안 설명)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 (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사안 설명 및 질의·응답: 담당부서,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8. 삭제

제23조 (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안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 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 (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절 규정의 개정

제26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적용·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적용·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